

NSW 전문 대리 주거 케어(SSRC)

가족들을 위한 정보



2024년 5월

www.ocg.nsw.gov.au

전문 대리 주거케어란 무엇입니까?

전문 대리 주거케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행해 주는 기관들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 오버나이트 (숙박) 레스파이트 (일시적 휴식) 케어 제공, 혹은
- 숙박 행동 지원 서비스 제공.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가족이 동의하여 그들의 자녀가 늘 살던 집에서 떠나 어떤 기관에서 숙박하며 돌봄을 받거나 이를 주선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기도 하는 일종의 주선입니다.

- 그룹 홈이나 레스파이트 환경에서 하룻밤 혹은 단기 숙소마련
- '호스트 가정' 주선 하에 다른 가정에서 하룻밤 지냄
- 보다 장기간의 주거 케어
- 레스파이트 케어나 행동지원에 초점을 둔 캠프

전문 대리 주거케어는 일회성 긴급 알선에 의해 제공되기도 하고 정기적이나 장기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선에 드는 비용은 가족들이 직접 지불하기도 하고 NDIS를 이용해서 지불하는 등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공사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제공사들은 자기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업계의 직업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돌보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아동안전 기준 시행에 힘써야 합니다.

제공사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안전기준 시행
- 케어 계획과 결정과정에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을 개입시키기
- 불만제거나 그 해소 방법에 대해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알고 있도록 하기
-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케어에 관한 기본정보를 SSRC 기록부에 기입하기
- 언제든 총 12 개월의 기간에 90 일 넘게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해 그들의 케어를 감독받게 할 것
- 언제든 총 12 개월의 기간에 180 일 넘게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반드시 승인받은 케이스 플랜을 갖추어 적어도 일년에 한 번씩 검토받게 할 것

가족들은 제공사를 정하기 전에 제공사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저희 웹사이트에 사용하실 점검 리스트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희의 역할

NSW에서는 아동 후견인 사무소에서 아동 안전제도의 일환으로 제공사들의 규제를 담당합니다.

저희 초점은 직업규약 준수 및 기관들이 아동 안전기준을 시행하는 지 모니터링하는 데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SRC 기록부

아동 후견인 사무소는 추가지원의 필요여부 파악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숙박 레스파이트 케어를 이용하는 횟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록부는 안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며 숙박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직접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들이 이를 업데이트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유합니다.

- 전에 사용했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포함한 아이의 이름

- 생년월일 및 출생장소
- 성별
- 호주 원주민 혹은 토레스 해협군도인인지
- 장애
- 제공사명
- 케어를 받은 기간의 길이
- 케이스 플랜이나 플랜의 검토가 있으면 그 날짜들

언제이든 총 12 개월의 기간에 아동이 숙박 케어를 90 일 넘게 받았으면, 해당 케어를 숙박케어 서비스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관에 의해 감독받게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감독하는 기관이 SSRC 기록부를 업데이트 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유하게 할 것입니다.

- 감독기관의 이름
- 감독을 시작한 날짜

아동이나 청소년은 제공사나 기록부가 자신에 관해 보유한 정보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거나 시정할 권리를 지녔습니다.

정보 교환

법의 다른 조항을 보면 (*1998년 제정 아동 및 청소년 (케어 및 보호)법* 16A 장), 전문 대리 주거케어 제공사들은 ‘법령에 규정된 기관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제공사들로 하여금 자신이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관’들이 다음과 같이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동이나 아동들의 안전, 복지 및 웰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 아동이나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결정평거나 계획, 수사개시나 실시, 혹은 서비스 제공
- 고용주나 지정기관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기관의 능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이나 아동들에 대한 위험요소 관리

아동이나 청소년의 안전, 복지 및 웰빙은 비밀보장이나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는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라도 제공되기도 합니다.